

■ 수도법 시행령 [별표 3의2] <신설 2021. 3. 30.>

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(제44조제1항 관련)

등급	자격요건
<p>1.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</p>	<p>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</p> <p>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(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·유지·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·유지·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</p> <p>나.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
<p>2.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</p>	<p>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</p> <p>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(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사람 또는 수도시설의 설치·유지·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</p> <p>나.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</p>